#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6-54호
2026. 11. 20.(금)


| 선 | 기관(부서)의 장 |
|---|---|
| 람 | |

## 차 례

### 고 시(4)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26-92호) ····· 1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26-93호) ····· 2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고시 제2026-94호) ····· 3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폐지 고시(고시 제2026-95호) ····· 14


### 공 고(4)


- 대덕문화체육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 체결 공고(공고 제2026-1150호) ····· 16
-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공고 제2026-1163호) ····· 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공고 제2026-1166호) ····· 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1169호) ·· 19


| 공람 |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미디어홍보과(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92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4항 및「지적측량시행규칙」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기준점 종 류 | 기준점 번 호 | 전 | | 후 | | 비 고 |
|---|---|---|---|---|---|---|
| | | 평면직각종횡선좌표 | | 평면직각종횡선좌표 | | |
| | | X 좌 표 | Y 좌 표 | X좌표 | Y좌표 | |
| 도근점 | 499 | 417803.41 | 239866.21 | 417803.95 | 239866.57 | 세계좌표(재설) |
| | | 317495.98 | 239794.46 | 317496.54 | 239794.75 | 지역좌표(재설) |
| 도근점 | 500 | 418011.91 | 239936.88 | 418011.25 | 239936.68 | 세계좌표(재설) |
| | | 317704.50 | 239865.15 | 317703.82 | 239864.90 | 지역좌표(재설) |
| 도근점 | 2647 | 417909.43 | 239903.00 | 417909.62 | 239903.19 | 세계좌표(재설) |
| | | 317602.01 | 239831.26 | 317602.18 | 239831.40 | 지역좌표(재설) |
| 도근점 | 2648 | 417963.34 | 239919.89 | 417965.31 | 239917.27 | 세계좌표(재설) |
| | | 317655.94 | 239848.17 | 317657.88 | 239845.49 | 지역좌표(재설) |
| 기 준 원 점 명 | | 중부원점 | | | | |
| 소 재 지 | | 대덕구 송촌동 567번지 일원 | | | | |
| 측 량 년 월 일 | | 2026년 9월 28일 | | | | |
| 측량성과보관장소 | |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 | | | |
| 비 고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93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4항 및「지적측량 시행규칙」제2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기준점 종 류 | 기준점 번 호 | 전 | | 후 | | 비 고 |
|---|---|---|---|---|---|---|
| | | 평면직각종횡선좌표 | | 평면직각종횡선좌표 | | |
| | | X 좌 표 | Y 좌 표 | X좌표 | Y좌표 | |
| 도근점 | 2003 | 419839.79 | 237216.62 | 419804.28 | 237245.62 | 세계좌표(재설) |
| | | 319532.64 | 237144.98 | - | - | 지역좌표(폐기) |
| 도근점 | 5183 | 419616.29 | 237090.96 | 419619.00 | 237089.50 | 세계좌표(재설) |
| | | 319309.20 | 237019.31 | - | - | 지역좌표(폐기) |
| 도근점 | 5184 | 419691.00 | 237283.07 | 419697.78 | 237273.40 | 세계좌표(재설) |
| | | 319383.90 | 237211.46 | - | - | 지역좌표(폐기) |
| 도근점 | 5865 | - | - | 419730.13 | 237051.91 | 세계좌표(신설) |
| 도근점 | 5866 | - | - | 419779.08 | 237034.95 | 세계좌표(신설) |
| 도근점 | 5867 | - | - | 419816.95 | 237126.40 | 세계좌표(신설) |
| 도근점 | 5868 | - | - | 419790.66 | 237194.58 | 세계좌표(신설) |

| | |
|---|---|
| 기 준 원 점 명 | 중부원점 |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13번지 일원 |
| 측 량 년 월 일 | 2026년 11월 06일 |
| 측량성과보관장소 |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
| 비 고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94호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제298회 대덕구의회 정례회에 보고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고시내용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 협의회 현황**

가. 협의회명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나. 설립목적 :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함

**3.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회원 및 임원의 권리・의무 등)

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회의 및 의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다.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재정에 관한 사항(재원, 회계보고 및 결산 등)

**4.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붙임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1부. 끝.

**붙 임**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2022. 3. 21. 제정
2022. 11. 30. 일부 개정
2023. 3. 16. 일부 개정
2024. 5. 30. 일부 개정
2024. 9. 24. 일부 개정
2026. 2. 12. 일부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상임회장 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관광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관광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관광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6.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26. 2. 12.)

② 선거 또는 업무 대행 등으로 그 지위가 승계될 경우 승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제5조의2(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의 가입은 “별지 제1호서식” 서식에 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서명된 참여동의서가 접수된 날로 하며, 제19조에 의한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갖는다. (개정 2026. 2. 12.)

② 회원의 탈퇴는 “별지 제2호서식” 서식에 의하며, 탈퇴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서명된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제5조의3(포상)**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발전 또는 지속가능관광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2.)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7조제1항에 의한 공동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부단체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3. 감사 2명

② 공동회장은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 정기총회 시 보고한

다. (개정 2026. 2. 12.)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6. 2. 12.)

② 궐위 또는 사고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회장의 중도사퇴 또는 퇴임의 경우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지명한 상임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⑤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 제 3 장 협의회 운영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6. 2. 12.)

③ 상임(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회의 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심의·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임원단 회의)** 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공동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로 구성된 임원단 회의를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② 임원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단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2. 12.)

③ 임원단 회의는 심의·회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제11조(의안의 제출)** ① 상임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임원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제16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무관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 제 4 장 고문과 자문

**제17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임원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12.)

③ 고문은 지속가능관광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개정 2026. 2. 12.)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총회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 안건에 대해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 5 장 사 무 국

**제18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관광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입안 (개정 2026. 2. 12.)
2.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 등
3.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 결과 관리
4.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관리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③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임회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

다.

④ 상임회장은 필요시 사무국에 지속가능관광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 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제18조의2(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 ① 협의회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속가능관광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사무의 위탁범위, 위탁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위탁 및 운영경비는 임원단 회의에서 정하며, 협의회 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원단 회의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2.)

## 제 6 장 재 정

**제19조(재원)** ①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 5,000,000원 (2024. 9. 24. 개정)
2. 특별회비
3.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② 본 협의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유관기관은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비금액은 별도 협의로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며,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계는 상임회장이 관장하고, 매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12.)

**제22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 7 장 보 칙

**제23조(제 규정)** 그 밖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은 임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1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재원) 제1항 제1호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24.9.24.)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2026. 2. 12.)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 참 여 동 의 서

우리 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 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고자 관광객, 지역 주민, 관광 사업체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불공정함과 불평등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내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초월하여 연대하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고 회원단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자 치 단 체 :

자 치 단 체 장 : (인)

| 담당부서 | | 담당자명 | |
|---|---|---|---|
| 행정전화 | | 직위(급) | |
| 휴 대 폰 | | 이 메 일 | |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 탈 퇴 신 청 서

우리 자치단체는「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단체로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음에 따라 탈퇴를 신청합니다.

202 . . .

자 치 단 체 :

자 치 단 체 장 : (인)

□ 탈퇴신청서 제출자

| | | | |
|---|---|---|---|
| 담당부서 | | 담당자명 | |
| 행정전화 | | 직위(급) | |
| 휴 대 폰 | | 이 메 일 | |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 출석 및 의결 권한 위임장

본인은 아래와 같이 실시되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이 불가한 바, **본 회원의 권한 일체를 의장에게 위임**합니다.

- 회 의 명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 회의일시 :

202 . . .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 ○ ○ ○ (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95호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 도로명주소 부여

| 지 번<br>주 소 | 도로명<br>주 소 | 건물번호<br>부여사유 | 도로명 부여사유<br>(도로명 고시일) | 부 여<br>고시일 |
|---|---|---|---|---|
| 읍내동<br>51-9 | 계족로 473 | 건물신축 | 아리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9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2010. 4. 20. |
| 신대동<br>171-2 | 회덕로34번길 22 | 건물신축 | 회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br>약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2010. 4. 20. |
| 신탄진동<br>859 | 한절구지로 79 | 건물신축 | 행정지명[한절구지]를 반영 | 2022. 12. 23. |

## ○ 도로명주소 폐지

| 폐지<br>도로명주소 | 관련지번 | 도로명주소<br>폐지일 |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
|---|---|---|---|
| 회덕로34번길<br>22 | 신대동 171-2 | 2026. 11. 12.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 아리랑로<br>197번길 66-5 | 읍내동 51-9 | 2026. 11. 13.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 계족로 735 | 읍내동 51-9 | 2026. 11. 13.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 계족로 733 | 읍내동 51-9 | 2026. 11. 13.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 아리랑로<br>197번길 64 | 읍내동 51-9 | 2026. 11. 13.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 폐지<br>도로명주소 | 관련지번 | 도로명주소<br>폐지일 |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
|---|---|---|---|
| 아리랑로<br>197번길 86-12 | 읍내동 51-9 | 2026. 11. 13.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 아리랑로<br>197번길 86-10 | 읍내동 51-9 | 2026. 11. 13.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 아리랑로<br>197번길 80 | 읍내동 51-9 | 2026. 11. 13.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 아리랑로<br>197번길 78 | 읍내동 51-9 | 2026. 11. 13.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 아리랑로<br>197번길 82 | 읍내동 51-9 | 2026. 11. 13.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 아리랑로<br>197번길 69 | 읍내동 51-9 | 2026. 11. 13.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150호

# 대덕문화체육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 체결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덕문화체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협 약 일: 2026. 11. 13.
2. 위탁기간: 2026. 8. 1. ~ 2031. 7. 31.
3. 위탁범위: 대덕문화체육관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전부
4. 수탁기관

| 수탁기관 | 대 표 자 | 주 소 |
|---|---|---|
| (사)대전대덕스포츠클럽 | 이 도 훈 | 대덕대로1486번길 85 (목상동) |

5. 위탁시설 현황

| 구 분 | 시 설 물 내 역 |
|---|---|
| 대덕문화체육관 및 부대시설 (3,005.02㎡) | 배드민턴장 6면 |
| | 탁구장 3면 |
| | 농구장 1면 |
| | 관람석 643석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163호

#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 공시

가. 정정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32-29번지 다가구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2022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

다. 정정사유: 공시 누락

라. 정정내역

| 기준일 | 대지면적(㎡) | | 건물연면적(㎡) | | 개별주택가격(원) |
|---|---|---|---|---|---|
| | 전체면적 | 산정면적 | 전체면적 | 산정면적 | |
| 2022.1.1. | 317.4 | 317.4 | 675.04 | 675.04 | 563,000,000 |
| 2023.1.1. | 317.4 | 317.4 | 675.04 | 675.04 | 532,000,000 |
| 2024.1.1. | 317.4 | 317.4 | 675.04 | 675.04 | 531,000,000 |
| 2025.1.1. | 317.4 | 317.4 | 675.04 | 675.04 | 532,000,000 |
| 2026.1.1. | 317.4 | 317.4 | 492.53 | 675.04 | 534,000,000 |

※ 개별주택 정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정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 - 116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기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

| 연번 | 상점가 명칭 | 위치 (구간) | 면적(㎡) | 점포 수 | 상인회명 (대표자) | 최초 지정일 |
|---|---|---|---|---|---|---|
| 1 | 중리동 골목형상점가 | 대전 대덕구 중리동 166번지 일원 | 2,734 | 42개 | 중리동골목형 상점가상인회 (윤둘숙) | **2021. 03. 30.** |
| 2 | 비래동 골목형상점가 | 대전 대덕구 비래동 140번지 일원 | 9,173 | 70개 | 비래동골목형 상점가상인회 (김화자) | **2021. 03. 30.** |
| 3 | 석봉동 골목형상점가 | 대전 대덕구 석봉동 202-5번지 일원 | 1,902.1 | 31개 | 석봉동골목형 상점가상인회 (백송자) | **2023. 03. 10.** |
| 4 | 88글러브 골목형상점가 | 대전 대덕구 오정동 431-12번지 일원 | 3,830.51 | 59개 | 88글러브골목형 상점가상인회 (이수희) | **2025. 05. 08.** |
| 5 | 용정 골목형상점가 |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6-1번지 일원 | 14,752.488 | 234개 | 용정골목형 상점가상인회 (백승영) | **2025. 10. 23.** |
| 6 | 새시장 골목형상점가 |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21-1번지 일원 | 8,655.438 | 105개 | 새시장골목형 상점가상인회 (이미선) | **2025. 12. 15.** |
| 7 | 법동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 | 대전 대덕구 법동 202-1번지 일원 | 6,300.99 | 83개 | 법동먹자골목 상점가상인회 (이선범) | **2026. 01. 12.** |

※ 비고: 위 상점가는 각 최초 지정일에 적법하게 지정되었으며, 본 공고는 관련 조례에 따른 대외 공시 절차 이행을 위한 일괄 공고임.

※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경제과 (☎ 042-608-692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169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행정안전부 2026년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를 일부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법의 이관에 따른 정비 / 목적, 기능, 정치적 중립, 위원의 해촉(안 제1조, 제5조, 제19조, 제22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나.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선정절차 및 기본교육 변경(안 제7조~제8조)

다. 주민자치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특별위원회 설치 및 특별위원회·분과위원회 참여대상 확대(안 제12조)

마.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바.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의무와 임기, 해촉, 정치적 중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 ~ 제33조)

자. 보칙(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 운영세칙,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연계법인 설립 등에 관한 사항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자치행정과

(전화: 042-608-6615, FAX: 042-608-3822, E-mail: yongs13@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행정과 담당자 (전화: 042-608-66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7조”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육·행사”를 “교육·행사,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제1항 본문 중 “공개추첨”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제8조제1항, 제2항, 제5항”을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있다”를 “있으며, 위원의 추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을 “위원 모집을 위하여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9조제6항 중 “주민자치회의”를 “주민자치회장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자치회의”를 “주민자치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 소재 사업장·학교·기관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5.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6.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제15조의 제목 “(운영)”을 “(회의 운영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6개월 이내”를 “임기내”로, “주민자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을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5.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제19조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한차례 연임 이후에는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추첨방법에 따른다.

제20조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2항 중”을 “제7조제2항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위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본교육”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26조제1항 중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며,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이를 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고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회계부정, 부당집행, 금품수수 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3. 운영성과가 현저히 부진하여 주민 복지증진 및 센터 운영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자치센터의 공익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유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외의 자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중 “주민자치회”는 “수탁기관”으로 본다.

제32조제2항 중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의 주민조직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4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자치회장이”를 “운영세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8. 연계법인·공유자원·공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마을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제38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br>----------<br>----------<br>----------<br>----------<br>----------<br>----------<br>----------<br>----------<br>----------<br>----------<br>----------.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2. (생 략)<br>3.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br>4.·5. (생 략) | 제2조(정의) ----------<br>----------.<br>1.·2. (현행과 같음)<br>3. --------- 제7조제1항 ---<br>----------<br>----------<br>----------.<br>4.·5. (현행과 같음) |
|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 | 제5조(기능)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br>----------<br>----------<br>----------.<br>1. ---------- |

| | |
|---|---|
| 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 ---------- ---------- 교육・행사, 지역공동체 형성 ---------- |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하는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삭 제> |
|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삭 제> |
| ②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br>1.「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br>2. 지방의회 의원<br>3.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신청자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 제8조(위원의 선정) ① ---------- ----------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 |

| | |
|---|---|
|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 ----------. |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⑥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 2. ----------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⑧ ---------- 있으며, 위원의 추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

| | |
|---|---|
| | 적인 사항은 추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 ⑨ ----------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 |
| ⑩ (생 략) | ⑩ (현행과 같음) |
|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단독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후단신설> |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또한,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자문을 위해 임기가 만료된 자치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장은 ----------. |
|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 |
| <신 설> |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

| | |
|---|---|
| |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③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 소재 사업장·학교·기관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
| <신 설> |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
|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삭 제> |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 ⑤ (생 략)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 제13조(주민총회) ① (생 략) | 제13조(주민총회) ① (현행과 같음) |
|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5.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

| | |
|---|---|
| | 보고 |
| <신 설> | 6.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
| 5. (생 략) | 7. (현행 제5호와 같음) |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삭 제> |
| 제14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 제14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분과별 사업계획 |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5조(운영) ① ~ ⑥ (생 략) | 제15조(회의 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 |

| | |
|---|---|
| 1. 위촉된 후 6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수 | 1. ----임기내---------- ----------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 |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
| <신 설> | 5.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19조(정치적 중립) ----------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 ---------- ---------- ---------- ---------- ---------- ---------- ---------- ---------. |
| 제20조(위원의 임기) <신 설> |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차례 연임 이후에는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추첨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 | ③ ---------- ---------- ----------. ---------- ---------- ---------- ----------. <후단 삭제> |

| | |
|---|---|
| 은 기간으로 한다. | |
|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 |
|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2. 2개동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 제7조제2항 각 호의 ---------- |
|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 |
| 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 |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 8. 위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8.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 |
|---|---|
| 제26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 제26조(운영) ① ----------<br>----------<br>----------<br>---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며,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이를 운영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고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br>1.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br>2.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회계부정, 부당집행, 금품수수 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br>3. 운영성과가 현저히 부진하여 주민 복지증진 및 센터 운영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br>4. 그밖에 구청장이 주민자치센터의 공익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유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
| <신 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③ (생 략)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 <신 설> | ⑥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외의 자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중 “주민자치회”는 “수탁기관”으로 본다. |
|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생 략) |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⑧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 <신 설> | ⑨ 구청장은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 | |
|---|---|
|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 ③ (생 략) |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④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의 주민조직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 제36조(운영세칙 등) ① (생 략) | 제36조(운영세칙 등) ④ (현행 제1항과 같음) |
| <신 설> |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br>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br>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br>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br>4.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br>5.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br>6.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br>7.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br>8. 연계법인·공유자원·공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9.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②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 ① ---------- ---------- ---------- 운영세칙으로 --. |
| <신 설> |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37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br>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br>2. 마을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br>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
| <신 설> | 제38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 |

| | |
|---|---|
| | 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br>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br>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br>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br>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br>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br>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br>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br>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br>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4.]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